

# 2023학년도 1학기 중간시험 시행지침 (학생용)

2023.3.20.(월)

1. 2023학년도 1학기 중간시험은 **대면평가 원칙으로(수업 특성에 따라 부정행위 방지가 가능한 교과목에 한하여 일부 비대면 평가 진행 가능)** 진행하고자 합니다.

## 2. 대면시험 응시 불가 사유 인정

중간 대면시험 응시 불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며, 학생이 지정된 절차에 따라 수업 담당 교강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응시불가사유	학생 제출서류
코로나19 확진자(자가격리자) 중 중간시험 당일을 포함하는 학생	①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 ② 코로나19 검사결과(확진 판정)

※ **유증상자 중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후 시험 응시 가능**

## 3. 대면시험 응시 불가 사유 인정 절차

- ① 학생 :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를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시험 1시간 전까지 E-mail 제출
- ② 교강사 : 신청서 검토 후 대체 평가 방법을 24시간 이내에 학생에게 통보

\* **신청서 제출 시한 : 시험 시작 1시간 전까지 교강사에게 E-mail로 제출한 경우만 인정 가능**

## 4. 대면시험 시 학생 주의 사항

구분	주의사항
중간 대면시험 전	① <b>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입실 완료</b>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(발열, 호흡기증상, 메스꺼움 등)이 있을 경우 자가진단 또는 병원 진단 후 음성일 경우 시험응시 가능 ( <b>마스크 착용 필수</b> ) ③ 코로나19 자가진단 또는 병원 진단 후 확진판정시, 절대 등교 금지 (수업 담당교강사에게 시험 시작 1시간 전까지 E-mail로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인정 신청서 및 코로나19 검사결과(확진 판정) 제출)

